'25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서울대학교 자체선발기준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 (기본원칙) 요건*을 갖춘 해당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동순위 경우) ① 근로기관 자체 선발기준 고득점자, ② 직전학기 미선발자(일반교내 유형만 해당), ③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 사유자, ④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 O (선발제외) 근로업무 부적합자, 과거 근태·근로불량자, 부정근로자 등
 - O (우선선발)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를 우선 심사하여 선발하며, 적격자 없을 시 희망근로기관 미신청자 중 선발 가능
 - O (미운영 유형) 교내-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교외-취업연계유형
 - O (대체장학생 선발)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기관별 선발

□ 교외근로(유형5)

1. 일반교외근로: 배점방식

O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항목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직전학기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배점(100점)	20점	20점	10점	50점

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기초~2구간	20	90 ~ 100	20		10	교외 기관별 자체 - 선발 기준**	50
3~4구간	17	84 ~ 89	17	직전학기 미선발자			
5~6구간	14	79 ~ 83	14	,			
7~8구간	10	70 ~ 78	10	지거하다! 서비년!	5		
9구간	0			직전학기 선발자			

* 백분위 환산점수는 한국장학재단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90.2 → 재단 환산 점수 90)

**[교외 기관별 자체 선발기준]

	심사항목	배점		비고
교외근로	교외근로지 근로희망 순위	1순위	30점	* 희망근로지를 교내근로지 1순위, 교외근로지
		2순위	20점	↑ 2순위로 신청한 경우, "1순위"로 판단 ★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는 2순위로 판단
자체 선발기준 (50점)	기관별 선발조건	충족	10점	* 특정 학년, 전공 등 수요조사서 제출 시 기재 내용으로 판단
		미충족	0점	* 근로기관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을 경우 * 충족으로 판단
	(필요 시) 근로지 인터뷰 등		10점	* 근로기관에서 선발(심사)에 참여 희망하는 경우 해당 * 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시행, 미시행 시 0점

2. 사업 운영 및 관리

-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 (사전교육) 근로기관별로 근로시작 전 업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별 안전유의사항, 부정근로 방지,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사전교육을 실시 하며, 근로 첫 달에 한해 근로 시간(최소 1시간)으로 인정
 - O (간담회) 근로기관별 자율적 실시
-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이중근로, 휴학 및 제적생 근로,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근로) 불허
 - 학적변동(졸업, 제적, 휴학 등) 발생 시 학적변동일 다음날부터 근로 중지 **※ 학적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O 근로장학 선발 제한 대상자(부정근로, 징계 등) 미선발 또는 선발 취소
- □ 근로기관 자격 관리
 - O 관리 부실 기관(부정근로 발생, 출근부 제출 지연 등)은 배정인원 회수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O 각 근로기관 담당자는 근로활동 **다음 월 5일까지** 출근부 확인 및 제출, 지급내역서 내부결재
 - O 근로활동 **익월 10일 경** 장학금 지급(단, 회계마감 등 경우에는 사전 안 내 후 변동 가능)
 - O 포털(mySNU) 개인정보에 입력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